

	<h2 style="margin: 0;">학부장회 운영규칙</h2>		규정번호	5-0-28	
			제정일자	2020.05.04	
			개정일자	-	
			개정번호	Ver.0	총페이지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동양미래대학교 학칙」 제58조에 따른 학부장회(이하 “본 회” 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본회는 총장의 자문기구로서 학사운영 관련 규칙 제·개정과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

- 제3조(구성)**
- ① 본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위원을 둔다.
  - ② 위원은 총장과 행정부서의 처장 및 부처장, 학부장, 종합정보지원실장, 교양과장, 기타 총장이 지명하는 보직교수로 구성한다.
  - ③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, 부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한다.
  -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- 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
**제4조(임기)** 본회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.

- 제5조(회의 및 회의록)**
- ① 본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.
  - ② 본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③ 본회의 회의록은 교무부처장이 작성하고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공지한다.

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0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진행된 회의나 기타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거 심의한 것으로 본다.